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59

발의연월일: 2024. 8. 5.

발 의 자:양문석・김우영・이기헌

서미화 · 김문수 · 김승원

김현정 • 허성무 • 박해철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매년 '기사형광고'가 성행하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기 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 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오인유 도표현 금지'위반으로 경고, 주의, 권고를 받은 '기사형광고' 건수가 매년 2천 건 이상의 '기사형광고'가 적발되고 있으나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없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사형광고'로 인한 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신설).

법률 제 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 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한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 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과태료) <u><신 설></u>	제39조(과태료) 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독자가 기사와 광고
	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
	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지 아니
	한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배열책임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①</u> · <u>②</u> (생 략)	②·③(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에</u> 따른 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	
한다.	